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11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 박수영ㆍ이인선ㆍ이종욱

백종헌 • 박성훈 • 송언석

강승규 • 이헌승 • 곽규택

박성민 • 박수민 • 서일준

김정재 · 김대식 · 정성국

조경태 • 주진우 • 서지영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, 누적된 고물가 · 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.

따라서,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.

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,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36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업업무추진비로서"를 "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액 중"으로, "기업업무추진비는"을 "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36조제6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6조(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	제136조(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		
불산입 특례) ① 삭 제	불산입 특례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	6		
이전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			
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			
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			
<u>기업업무추진비로서</u> 다음 각 호	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같은 법		
의 요건을 모두 갖춘 <u>기업업무</u>	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		
<u>추진비는</u> 내국인의 기업업무추	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		
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	비의 합계액 중 기업업무		
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	추진비에 대해서는		
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			
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			
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			
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